

June 23, 2020

Legal Update

Policy and Law Report _Vol.40

- 정부 주요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0. 6. 15. ~ 6. 19.) -

법무법인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업무담당자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주에는 각 부처별 ‘제21대 국회 개원 업무보고자료’ 및 ‘제21대 국회 정무위원회 정책 자료집’ 중 기업(협회) 관련 사항을 첨부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금융위1] 2020년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 발표

2020. 6. 11. 하반기 업무계획 핵심과제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 ①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는 8월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 신청을 받아 10월경부터 정식 허가, ② 3분기 중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혁신방안 마련, ③ 현재 시범사업 중인 동산담보회수기구를 6월말부터 본격 가동 등이 있음

[참고자료]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 개최



[참고자료]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과제



[금융위2]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법」에 대한 규제입증위원회 심의

2020. 6. 12. 규제입증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 및 「신용정보법」에 대한 개선 사항을 결정함. 주요 내용으로 ① 금융회사 등이 책임지는 전자금융사고 범위 확대, ② 전자금융업 인허가 대상 정비·확대(MyPayment,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 ③ 신용정보업자의 대주주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준하여 지배주주 자격요건 강화 등이 있음

[참고자료] 규제입증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과기부1] 미세먼지 R&D 추진전략 발표

2020. 6. 12. 미세먼지 문제해결 등을 위한 미세먼지 R&D 추진전략을 수립함. 주요 내용으로 ① 배출 저감 기술개발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원인규명 기초 연구에 집중 투자, ② 미세먼지를 입체적으로 관측할 수 있도록 위성 데이터 처리 알고리즘과 항공 관측 기법 등 개발, ③ 미세먼지 R&D 협의체를 운영하여 미세먼지 R&D 추진 과정상의 병목 문제를 해결하고 연구자 애로사항 수렴 등이 있음

[참고자료] 미세먼지 추진전략 발표



[과기부2] 디지털 뉴딜 사업설명회 개최

2020. 6. 16. DNA 생태계 강화, 디지털 포용 및 K-사이버방역, 혁신인재 양성, 비대면 서비스·산업육성으로 구분한 디지털 뉴딜 주요 사업 설명회를 개최함. 주요 내용으로 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AI 모델 개발에 필수적인 AI 학습용 데이터 확대 구축·개방(3차 추경 2,925원), ② AI 솔루션 구매 및 적용 등을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을 통해 기존 산업과 AI 융합을 통한 신시장 가치 창출(3차 추경 560억원), ③ Mobile Edge

Computing 기반 5G 융합 서비스 공공부문 선도 적용(3차 추경 400억원) 등이 있음

[참고자료] 디지털 뉴딜 사업설명회 개최



[과기부3]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착수

2020. 6. 17. 「소프트웨어진흥법」 전부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및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함. 주요 내용으로 ① 새로운 하드웨어 인프라 변화를 지원하기 위한 비대면·디지털 전환, 빅데이터 활용, AI 반도체 등 미래 유망 소프트웨어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② 해외진출지원,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개선, 프로세스 품질 인증 활성화, ③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지정 요건 완화 및 진흥기관 지정,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단지 구축 도모 등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 체계 마련 등이 있음

[참고자료] 소프트웨어 진흥 방안 본격 논의 착수



[과기부4] 코로나 이후 과학기술 정책방향(안) 발표

2020. 6. 17. 비대면·원격 문화 확산으로 인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코로나 이후 환경변화에 따른 과학기술 정책방향(안)을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 ① 비대면·원격서비스, 바이오헬스 등 코로나 이후 확대가 전망되는 기술에 대한 선점 투자 및 민간 주도의 R&D 체제로의 전환, ② 디지털 뉴딜을 통한 인프라 투자 및 서비스 지원, GVC 재편에 대응한 스마트 제조혁신과 지역 혁신역량 제고, R&D기반 창업과 성과 확산 등 산업의 디지털 전환 대응력 강화, ③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혁신 선도모델 개발·확산 등이 있음

[참고자료] 코로나 이후 환경변화 대응 과학기술 정책포럼 개최



[과기부5] 광주연구개발특구(첨단3지구), 인공지능 집적단지 등 연구산업복합단지 조성계획 확정

2020. 6. 18. 광주특구 미개발지인 첨단3지구 내에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 중심의 연구산업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개발계획 확정. 주요 내용으로 ① 전체의 약 32.9%를 AI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를 포함한 연구·산업용지 등으로 계획, ② AI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를 광주과학기술원과 인접한 지역에 배치하여 우선 추진, ③ 산업용지 중 제조업 용지는 광주광역시 11대 대표산업 등을 고려하여 ‘연구, 광기반융복합, 스마트케어가전, 차세대전지, 나노산업, 의료산업’ 등으로 계획 등이 있음

[참고자료] 광주연구개발특구(첨단3지구)에 연구산업복합단지 조성계획 확정



[기재부·국토부] 해외수주 활성화 방안 발표

2020. 6. 15. 신속한 경제회복을 위한 해외수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 주요 내용으로 ① 시공사 금융주선 등의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 수주 지원 확대(1천억불 규모), ②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등 각 분야별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글로벌 PIS 자펀드(1.5조원) 조성, ③ 신남방·신북방 지역 등 중점 협력 지역 프로젝트의 금융지원을 위해 기 조성된 글로벌 인프라펀드(4~7호) 적극 투자 등이 있음

[참고자료] 제215차 대외경제장관회의



[참고자료] 해외수주 활성화 방안



[국토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2020. 6. 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함(시행: 7. 1.). 주요 내용으로 ① 유가보조금 지급 요건 추가(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 및 실제 사업을 영위할 것), ②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적발횟수에서 위반횟수로 변경, ③ 부정수급에 가담 또는 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한 유류구매카드 정지 기간 대폭 확대 등이 있음

[참고자료] 화물운송시장 안전은 높이고 규제는 완화



[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에 대한 지원방안 발표

2020. 6. 17. 코로나19 및 미등록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들의 변칙영업 등에 따른 지원방안을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 ① 공제조합에 납부하는 공제료를 1년 동안 50% 인하, ② 할부거래법상 정식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일부 업체들의 허위·과장 광고 행위 집중 단속, ③ 은행에 지급보증 수수료 일정기간 완화 요청 등이 있음

[참고자료] 코로나19 관련 상조업체 추가지원 방안 마련 및 시행



[산자부]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 본격 착수

2020. 6. 17. 미래 조선·해운산업을 업그레이드할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통합사업단을 발족하고 사업에 본격 착수함. 주요 내용으로 ① 올해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약 1,600억원 투입, ② 울산광역시에 자율운항선박 통합 성능 검증을 위한 성능실증센터 구축, ③ 자동차 플랫폼 개발과 실증 관련 사항 등 산자부 소관 과제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운용기술 개발과 표준화 관련 사항 등 해수부 소관 과제는 한국선급이 각 총괄기관으로 선정되어 통합사업단 구성 등이 있음

[참고자료] 바다의 미래를 주도할 자율운항선박 개발 프로젝트 본격 착수



2. 주요 입법(안) 동향 *해당 의안명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2인)]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의 등장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를 목적으로 한 가상통화의 거래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가상통화의 정의와 가상통화거래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가상통화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상통화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통화취급업의 인가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가상통화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3호 신설 등)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1인)]

지배주주 인정요건으로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명의로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발행주식총수 산정 시 자기주식을 제외하며, 보유주식 산정 시 모회사와 자회사의 주식을 합산하는 경우에도 자기주식을 보유주식수에서 제외하고, 매매가액 산정 근거 및 적정성과 관련한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일정 기간 비치·열람하도록 함으로써 소수주주의 축출 남용을 방지하여 소수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60조의2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경우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의 배정을 금지하고, 분할승계회사에 대하여는 신주발행 뿐만 아니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행위도 금지하여 회사의 자본을 통한 대주주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를 육성하려는 것임(안 제530조의8 신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보험금청구권 등에 대한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그 지급 여부에 대한 확정적 회신을 받을 때까지는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함으로써 보험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62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2인)]

2인 이상의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의무화, 이사 해임 요건 완화 및 주주의 부적격 이사에 대한 해임요구권 등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종전의 기업지배구조를 탈피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기업의 경영 여건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코스피 3000시대를 열고자 함(안 제 382조의2 및 제542조의7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이 법을 위반한 경우 기업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법 위반으로 얻는 이득에 비해 과징금의 액수가 적어 상습적으로 이 법을 위반하는 기업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습적으로 이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게 과징금에 대한 가중규정을 두어 시장경제 질서를 준수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55조의3제5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3인)]

중소기업이나 협동조합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공유제를 위한 협의를 위하여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지 않음으로써 중소기업이나 협동조합의 교섭권을 강화시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안 제19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2인)]

현행법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청구권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해사업자에 대한 사전적 구제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신설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1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존속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해 단순분할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가 배정한 신주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여 회사의 자본을 통한 대주주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 11조제2항 신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1인)]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TV홈쇼핑, 대형마트, 백화점, 일부 온라인몰 등 대규모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들 업체의 판매수수료율을 공표한 바 있으나, 이들과 유사한 판매행위를 하지만 해당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닌 포털사이트와 오픈마켓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이에 규율 대상을 특정 영역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현행법에 일정한 거래분야의 거래실태 등을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는 서면실태조사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5 신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등 22인)]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서 공정위가 입증해야 하는 부당성에 대한 판단을 제외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수관계인이 정상적인 거래에서의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과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행위 규제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은행권 계좌이동제에 관한 근거규정을 법에 명기함으로써 은행이 부담해야 할 의무를 확실히 하고 고객의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 시에는 금융위원회가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2조의5 신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불공정거래행위나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을 기본적으로는 그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하되 각 유형별로 대통령령에서 산정방식을 정하도록 하여 법적 분쟁의 여지를 줄이고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과 함께 철저한 범죄수익 박탈로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질서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43조의 2 신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6인)]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신용공여에 대한 예외적 허용 사유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거나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신용공여를 허용하여 금융투자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77조의3제9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준표의원 등 11인)]

정비사업 중 공공성이 비교적 높은 주거환경개선·재개발사업에 대해서만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 건설 의무를 두도록 하고,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평가기준 중 안전성평가 가중치를 종전의 20%로 하향조정하여, 규제완화를 통한 재건축사업의 활성화 및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등)

3. 각 정부부처별 제21대 국회 개원 업무보고자료

고용부		금융위		보건부	
공정위		기재부		산자부	
과기부		농축산부		외교부	
국토부		방통위		중기부	

4. 제21대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현안별 현황 및 주요 쟁점

제21대 국회 정무위원회가 발간한 정책자료집에서 기업이나 협회와 관련된 공정위, 금융위의 최근 현안별 정책방향을 선별하여 소개 드리니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대 국회 정무위원회 정책자료집_발체]

법무법인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은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실무자 중심의 대관업무 전문팀입니다.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실용성을 갖춘 다수의 정부부처 및 국회 출신의 실무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정부 예산안 집행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act us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박현주 (Hyunju Helen Pak)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김성범
파트너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홍정아 (Claudia Chong-Ah Hong)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문응필
소속변호사
T. 02-316-4047
E. epmoon@shinkim.com



방세희
소속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노지은
소속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최유리
소속변호사
T. 02-316-1748
E. yrchoe@shinkim.com



성재열
소속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
